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박 진 희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3년 4월 10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11일

3. 제안이유

-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는 통학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도지사의 통학로 지정 요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및 주정차금지 요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5. 검토내용

###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보호 구역의 도로 중 일정한 장소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임.
- 도 내 5개 시·군<sup>1)</sup>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충북도는 따로 조례를 두고 있지 않아 도 차원의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는 통학로에 관하여 규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참 고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정일	13.10.4	08.11.5	17.10.30	10.2.22	12.5.15	11.12.30	13.6.28	14.12.22
시·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정일	12.11.6	19.3.8	16.4.11	13.8.9	20.3.16	12.4.9	21.7.8	10.6.29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음성군.

있는 사항에 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4조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개선방향 및 현황,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노상주차장의 폐쇄 또는 이전 계획, 차량진입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는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는 도지사가 충청북도경찰청장·경찰서장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에 대하여 주정차금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신호기·안전표지·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는 도지사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그 밖의 조문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3. 4. 12.~4. 18.)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통학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지정 및 주정차금지를 위한 신호기·안전표지·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차량통제에 관한 권한은 충청북도경찰청장·경찰서장에게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도지사의 적극적인 요청 및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통학로에 대한 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 통학로 지정 요청·차량통제 요청·주정차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례제정의 필요성,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제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하여 시장·군수, 충청북도경찰청장·경찰서장에게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적극적인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